

『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』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

창업도약기(3~7년) 기업이 어려운 시기(죽음의 계곡)를 극복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『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』 ‘사업화지원’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31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

모집 개요

- 사업목적** : 창업도약기(3~7년) 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 및 사업모델 개선, 시장진입 등을 위한 사업화 지원
- 지원대상** : 창업 3 ~ 7년 도약기 기업
 - * 단, 업력 미충족 기업 중 초기단계 사업 ‘성공’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성공패키지 ‘최우수’ 판정 기업은 <붙임 2>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‘패스트트랙’ 기업으로 지원가능
- 지원규모** : 총 540개사 내외(최대 3억원, 평균 1.5억원 내외)
- 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



□ 신청자격

- (도약기 기업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 ~ 7년 이내인 자
- (패스트트랙 해당기업) 초기창업패키지 등 초기단계 사업 '성공'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성공패키지 '최우수' 판정 기업 중 <붙임 2>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

< 신청자격 세부조건 >

▶ 신청가능 업력 : 2014년 3월 31일 ~ 2018년 3월 31일

- *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*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- * 다수사업자 :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소지한 경우,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.
<붙임 1>의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
- * 공동·각자대표 :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□ 신청(지원) 제외 대상

< 신청(지원) 제외 대상 세부조건 및 예외사항 >

▶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- *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('21.4.22)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▶ **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**

- 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·접수 마감일 ('21.4.22)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▶ **중소벤처기업부 (舊 중기청) 창업사업화지원사업,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** ※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- *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(지원) 불가
- * 중소기업부(舊 중기청),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·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(지원) 가능
- *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

▶ **중소벤처기업부 (舊 중기청)의 '16~'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 지원*, '18~'20년 포스트팁스(POST-TIPS)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(기업)**

- * 사업화지원 외 성장촉진 프로그램만을 지원받은 자(기업) 신청 가능

▶ **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자(기업)**

▶ **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**

- * 지원제외 대상 업종 <붙임 3> 참고

▶ **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**

▶ **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, 전담인력, 겸직인력, 스카우터로 참여중인 자(기업)**

▶ **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자는 자(기업)**

▶ **기타 중소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**

- **지원기간** : 선정 후 10개월 이내 ('21.5월 말 ~ '22.3월 말 예정)
- **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,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등

지원 구분	지원 세부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화 자금	<p>▶ 사업모델(BM) 개선, 아이템 검증·보강 등 “매출증대” 및 “시장진입·검증”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(협약기간 : 10개월 이내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지원한도</th> <th>지원기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최대 3억원 한도(평균 1.5억원 내외)</td> <td>선정 후 10개월 이내 (~'22.3월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총 사업비 구성 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정부지원금</th> <th colspan="2">창업기업 대응자금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사업비의 70% 이하</td> <td>총 사업비의 10% 이상</td> <td>총 사업비의 20% 이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사업비 구성 예시 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총사업비</th> <th rowspan="2">정부지원금</th> <th colspan="2">창업기업 대응자금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15백만원</td> <td>150백만원</td> <td>22백만원</td> <td>43백만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9.8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.2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.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원한도	지원기간	최대 3억원 한도(평균 1.5억원 내외)	선정 후 10개월 이내 (~'22.3월)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		현금	현물	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총 사업비의 20% 이하	총사업비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		현금	현물	215백만원	150백만원	22백만원	43백만원	100%	69.8%	10.2%	20.0%
	지원한도	지원기간																									
	최대 3억원 한도(평균 1.5억원 내외)	선정 후 10개월 이내 (~'22.3월)																									
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																									
현금		현물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총 사업비의 20%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
총사업비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																									
		현금	현물																								
215백만원	150백만원	22백만원	43백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
100%	69.8%	10.2%	20.0%																								
특화 프로그램	<p>▶ 전담·주관기관이 제공하는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</p> <p>* (특화프로그램) 도약기 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지원을 위해 전담기관(창업진흥원) 및 주관기관에서 교육, 네트워킹, IR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원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※ 주관기관 역할 : 창업기업 지원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,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을 지원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신청 · 접수기간

- 2021년 3월 31일(수) ~ 4월 22일(목), 18:00까지

※ 유의사항

- 1)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'을 미리 진행**하는 것을 권장 ("제출완료"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)
- 2) **접수마감일 18:00 정각에 접수가 마감**되며, 18: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(1단계 이상 저장 과제)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:00까지 작성항목 수정 및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. 마감시간 18: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

□ 신청방법

-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
※ 유의사항

- 1) **사업 신청은 신청(지원)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,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**
- 2)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하여 신청하며, 신청한 각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선정

- 온라인 신청절차 및 서류

구분	(1단계) 일반현황	(2단계) 제출서류 등록
신청절차	신청자(기업) 기본정보 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제출서류	-	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및 각종 증빙서류(가점 등)

- * 가점 등 증빙서류는 **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, 미제출시 불인정**

<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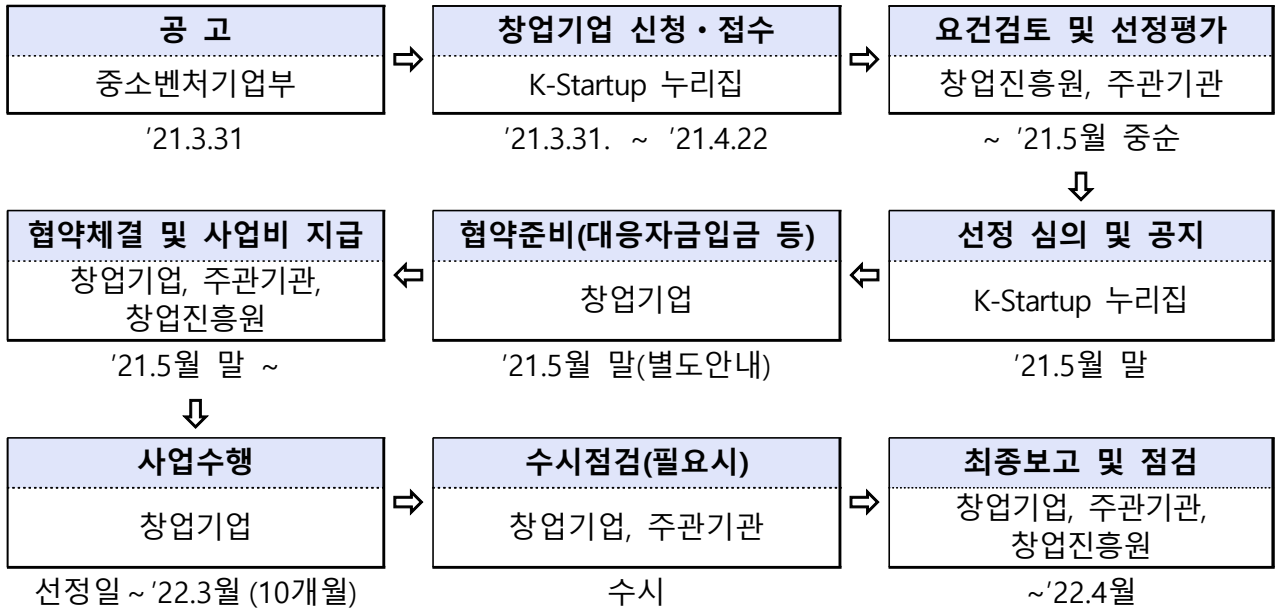
- ① www.K-startup.go.kr 누리집 접속 → ② 회원가입(개인회원) 및 로그인 → ③ 사업신청관리 클릭 → ④ 사업신청 메뉴에서 『창업도약패키지』 공고 클릭 → ⑤ **기본정보 입력** → ⑥ **사업계획서 등 업로드(용량제한 30MB 유의)** → ⑦ 제출 * 세부내용은 신청접수 매뉴얼 참조

- * K-startup(구 창업넷) 누리집 기존 가입자는 '② 회원가입' 생략
- ** K-startup 누리집 가입시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. 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은 실명(개명)정보가 SCI(서울신용평가정보)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-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(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,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)

*** K-startup 누리집은 Windows(인터넷익스플로러, 크롬, 엣지, 파이어폭스, 웨일) 또는 MAC OS(사파리, 크롬)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, MAC OS에 Windows를 설치하여 접속할 경우 신청 불가

□ 세부 추진일정

※ 세부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

5

평가 및 선정

□ 평가 절차 및 기준

○ (평가절차) 총 2단계 평가(서류 → 발표평가)를 통해 최종선정

*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(제외) 자격 조건에 대한 요건검토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며, 선정 이후에도 자격 조건 미충족자는 탈락 처리

< 창업기업 평가단계 및 내용(안) >

평가단계		수행기관	수행내용
요건검토		전담기관 및 주관기관	· 설립연월일, 신용정보 등 신청제외 대상여부 검토
1단계	서류평가	주관기관	· 기술·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
2단계	발표평가		·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· 사업비 적정성 심의
최종선정		전담기관 주관기관	·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공지 · 대상자별 선정 및 정부지원금 안내

- (평가기준) 창업기업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직원의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(평가항목) 창업아이템 및 시장에 대한 문제인식(20%), 실현가능성(20%), 성장전략(40%), 기업 역량(20%) 등
- ① 1단계 평가 : 서류평가(기업별 가점 반영)를 통해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

<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>

구분	평가내용	가점	제출서류
가점 (최대 3점)	1) 고용·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- 개인, 법인 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(점) 소재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	1점	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	2) 감염병* 예방·진단·치료 관련 제품·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<붙임 4> 참조 *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름	1점	사업계획서 내 별도양식(붙임4) 작성 제출
	3) 공고일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업기업	1점	공제가입증서

*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, 신청 시 증빙제출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

<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안내 >

서류평가 면제 대상	비고
1) '21년 창업도약패키지 기술창업 스카우터(주관기관) 추천기업 ◆ 기술창업 스카우터 :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주관기관에 등록된 투자 전문인력 -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도약기 기업 중 주관기관 소속 기술창업 스카우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 - 추천 후, 투자 미이행 시 창업기업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* 투자요건 등 세부 내용은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	주관기관이 해당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
2) '20년 도전 K-스타트업 통합본선 진출자	전담기관이 통합본선 진출자 명단 확인 예정

- *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, '21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,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해야함
- **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과정은 타지원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,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선정 T/O를 두고 있지 않음

- ② 2단계 평가 :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하며, 발표평가 결과(80%)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(20%)를 합산하여 선정

*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세부내용은 <붙임 5> 참조

**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한 현장평가가 실시 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중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,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□ 최종선정

○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* 배정 및 선정기업 최종 확정 공고

* 창업기업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차등 지원

6

선정자의 의무

○ 선정자는 『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』 및 『창업도약 패키지 세부관리기준』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

*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, K-startup 누리집 공지 사항 및 자료실에 게시 예정

○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
○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(현금)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
○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○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(설명회 등)체결,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○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□ 신청 관련 유의사항

-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선정자는 동 공고문,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, 창업도약 패키지 세부관리기준, 전담기관(창업진흥원)·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)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- '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*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(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)
 - * (창업지원사업)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 - ** (주의) 동시 선정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,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
- 중소벤처기업부(舊 중기청)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을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불가
 - *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 외 지자체 지원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하고, '신청(지원)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
- *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**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

□ 평가 관련 유의사항

- ‘발표평가’ 및 ‘현장평가’ 과정에 신청자(대표자)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,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 - *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시 현장평가가 추가 될 수 있음
-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, 1회에 한함

□ 선정 및 협약 관련 유의사항

-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“형법”, 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”,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, “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”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를 부정 수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에 추가하여 부정이익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창업자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” 제32조, 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조치** 할 수 있습니다.
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-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 - * 기술창업 스카우터를 통해 추천된 기업이 선정 후, 투자 미이행('21.12.31까지) 또는 투자금 철회(협약종료 이전) 시 창업기업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
-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, '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해 관리 운영됨
 - 또한, 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'중단 또는 회수' 될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

□ 사업 신청 문의

- (신청·접수 시스템(K-Startup) 관련 문의) 국번없이 1357
- (사업 관련 문의) 주관기관 담당자

No	지역	주관기관	연락처		
1	서울	한국기술벤처재단	02-958-6692		
			02-958-6690		
2		한국보건산업진흥원	02-2095-1743		
			02-2095-1752		
3		한양대학교	02-2220-2871		
			02-2220-2861		
4		경기	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	070-4164-4284	
				070-4163-6899	
5			부천산업진흥원	070-7094-5455	
				070-7094-5458	
6			인천	인천테크노파크	032-250-2151
					032-250-2152
7	강원	강원도경제진흥원	033-749-3306		
			033-749-3366		
8	충북	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	043-299-8690		
			043-299-8692		
9		충북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	043-249-1386		
			043-261-3849		
10		대전	한국수자원공사	042-629-2505	
				042-629-2506	
11	광주	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	062-610-9511		
			062-610-9512		
12	제주	제주테크노파크	064-720-3073		
			064-720-3054		

13	전북	한국탄소산업진흥원	063-219-3675
			063-219-3678
14	대구	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	053-939-6196
			053-939-6197
15	경북	대구대학교	053-850-4387
			053-850-4381
16		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(인공지능연구원)	054-279-5620
			054-279-5619
17	부산	부산디자인진흥원	051-950-1220
			051-950-1224
18	울산	울산경제진흥원	052-710-5903
			052-700-7224
19	경남	한국세라믹기술원	055-792-2766
			055-792-2772
20		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	055-291-9345
			055-291-9356

□ 온라인 사업설명회

- (개최일정(안)) '21.4.8(목) 14시
- (접속링크) <https://www.youtube.com/c/창업진흥원kised>

*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

【붙임 1】

창업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 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유지	창업아님	
		이종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	창업아님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폐업 3년 까지 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			창업아님 창 업 창업아님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	창 업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유지	창업아님	
		동종의 신규 법인설립		창 업
		이종	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 업 창업아님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 또는 최대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업아님 창 업
자회사 여부	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이면서 최대주주		창업아님	
조직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
	이종		창 업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	창 업	

* **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** : 영 시행(2020.10.8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* 업종은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를 기준으로 하며, 세세분류(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업종" (통계청 통계분류포털(kssc.kostat.go.kr) 참조)

【붙임 2】

초기-도약 사업간 패스트트랙 자격기준

※ 패스트트랙 해당 사업

구분	해당사업	자격 요건
초기단계 사업	'18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, '18년 스마트 벤처캠퍼스, '18년 세대융합창업캠퍼스, '19~'20년 초기창업패키지(추경 포함)	'성공(최우수, 우수, 보통)' 판정기업
재도전 사업	'19~'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(추경 포함)	'최우수' 판정기업

※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자격 요건

구분	자격 요건	증빙 서류
필수	① 창업도약패키지 공고일 기준 - 초기단계 사업 최종평가 '성공' 판정 기업 - 재도전 사업 최종평가 '최우수' 판정 기업 * 단, 성공판정 당시의 대표자, 기업이 동일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**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수행을 완료하고, 성과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'20년 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'20년 성과평가 결과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	- 증빙자료 불필요(창업진흥원 확인)
	②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	-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이력 및 가입자명부(대표자 제외)
선택 1개	①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	-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이력 및 가입자명부(대표자 제외)
	②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	- 재무제표(손익계산서(필수)),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, 세금계산서 등 * '20년 결산기준
	③ 해외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한 기업	-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외국인회사 등록증(영업허가증) 등
	④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거나 협업 추진 기업	- 양도, 실시권 허락, 라이선싱 계약, 합작투자 또는 인수·합병, 공동연구 개발 등 - 대기업, 중견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서 등 협업 관련 증빙

* 증빙자료는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해당자만 제출

【붙임 3】

지원제외 대상 업종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 유흥 주점업	56211
2	무도 유흥 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【붙임 4】

**감염병 예방·진단·치료 관련 제품·서비스를
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가점 자격기준**

※ 가점자격기준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*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기업

* 업종코드 세분류(4자리)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. 단,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 시 서면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

<감염병 예방·진단·치료 관련 업종코드>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	27112
2	생물학적 제제 제조업	21102
3	완제 의약품 제조업	21210
4	한의약품 제조업	21220
5	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	27199
6	화학 살균·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	20321
7	생물 살균·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	2032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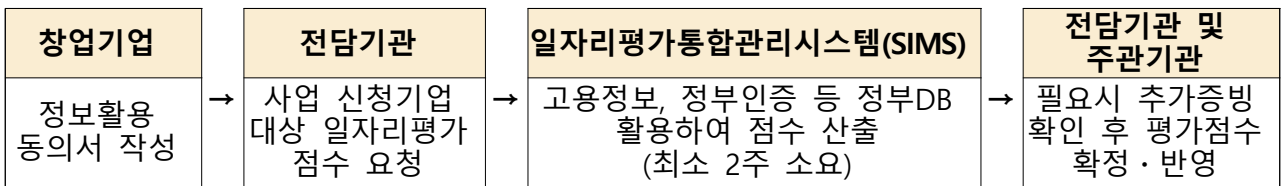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【붙임 5】

일자리평가 평가항목

1. 개요 : 일자리를 창출하고,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정부지원사업에 우대선정하기 위해, '중소기업 일자리평가' 도입
2. 평가방법 : 기업의 사용자지표 데이터를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하여 점수 제공(발표평가 총점의 20% 반영)

< 일자리평가 절차 >



3. 평가항목 * 세부 평가항목은 해당부처의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구 분	평가분야	평가항목	배점한도	비 고
I. 일자리 양	고용증가	가.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.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	70	가. 항목(고용보험 가입자 증가)과 나. 항목(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)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
II. 일자리 질	성과공유	가. 미래성과공유 협약 (+15) 나. 성과급 지급 (+15) 다. 임금수준 상승 (+15) 라. 우리사주제도 운영 (+15) 마. 사내/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(+15) 바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(+15) 사. 내일채움공제/청년내일채움공제/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(+15)	30	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
III. 고용질서 준수	법령준수	가. 고액·상습 임금체불 (-10) 나.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(-10)	-20	
IV. 가점	근로환경	가. 근로시간 단축 (+10) 나. 정주여건 개선 (+5) 다. 가족친화인증 (+5) 라. 청년친화강소기업 (+5) 마. 노사문화우수기업 (+5) 바. 인재육성형중소기업 (+5) 사.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(+5) 아.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(+5) 자. 현장실습 선도기업 (+5) 차.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(+5) 카. 존경받는기업안이 대표로 있는 기업 (+5)	10	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
합 계			-10~100	가점포함 최대 100점

4. 평가항목별 개요 및 문의처

평가항목	내용 및 문의처
미래성과공유 협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▪ (문의처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02-2230-2160), https://sanhakin.mss.go.kr
성과급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▪ (문의처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(055-751-9825), https://sanhakin.mss.go.kr
임금수준 상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근로자의 해당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▪ (문의처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(055-751-9825), https://sanhakin.mss.go.kr
우리사주제도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'전체'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, 보유하게 하는 제도 ▪ (문의처)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, https://esop.ksfc.co.kr
사내(공동) 근로복지기금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(공동) 근로복지기금 법인설치 및 기금운영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▪ (문의처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(055-751-9825), https://sanhakin.mss.go.kr
주식매수선택권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▪ (문의처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(055-751-9825), https://sanhakin.mss.go.kr
내일채움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▪ (문의처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00-7900, https://www.sbcplan.or.kr/
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, 기업,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+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▪ (문의처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00-7900, https://www.sbcplan.or.kr/
근로시간 단축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근로시간 조가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'근로시간 단축 확인서'를 발급받은 기업 ▪ (문의처)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(지)청
정주여건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중기부-국토부(LH)가 공급하는 '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'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▪ (문의처) 중소벤처기업부 (044-201-1664)
가족친화인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▪ (문의처) 한국건강가정진흥원(02-6309-9048), http://www.ffsb.kr
청년친화강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▪ (문의처) 중소기업중앙회 (02-2124-3305), http://www.work.go.kr/smallGiants

<p>노사문화우수기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▪ (문의처) 노사발전재단 (02-6021-1055), https://www.nosa.or.kr
<p>인재육성형중소기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▪ (문의처)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055-751-9035), https://sanhakin.mss.go.kr
<p>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「인적자원개발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▪ (문의처) 한국산업인력공단 (052-714-8216), http://www.hrdkorea.or.kr
<p>안전보건경영시스템 (KOSHA 18001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 18001) 인증을 받은 기업 ▪ (문의처) 안전보건공단 (052-7030-593), http://www.kosha.or.kr
<p>현장실습 선도기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중 고졸채용실적, 안전대책 마련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'현장실습 선도기업'으로 인정 ▪ (문의처) 사업장 소재지 시·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
<p>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 복지 기업 ▪ (문의처)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(042-481-1664, 1662)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(02-6050-3455)
<p>존경받는기업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성과공유,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“혁신”과 “상생”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▪ (문의처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(055-751-9825)